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안 번호	30
----------	----

제출년월일 : 1998년11월 일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 1. 제정이유

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5903호) 제10조에 따라  
제2의 전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 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 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영주시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제2의 전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  
하여야 할 사항, 제2의 전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  
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고문을 들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참고자료

- 가. 표준조례(안)
- 나. 관련법령(발췌) : 덧붙임

## 영주시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전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에 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제2의 전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전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전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2. 경찰서 경무과장
  3. 교육청 학무과장 등 제2의 전국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 지방행정 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4. 제2의 전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서기는 시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3  
16.7"관인생략"  
경상북도

주	장	경상북도지방과
동	장	전화 053) 950-2223
		950-2229

우 702-702 대구 북구 산격동 1445-3 / 전화 (053) 950-2223 / 전송 950-2229  
자치 행정과, 과장 주낙영, 행정 담당사무관 이강문, 담당자 김동봉

문서 번호 행정 13060-1443

시행 일자 1998. 10. 27 (1년)

수신 시장·군수  
 예상자  
 담당자  
 기관  
 관리자  
 00788

참조 총무·내무과장  
 00788

## 제 목 부시장·부군수 회의 개최

1. 당면 현안사항 시달을 위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참석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대리 참석 불가)

가. 일 시 : 1998. 10. 30 (금) 14:00

나. 장 소 : 도청 강당

다. 참석 : 부시장·부군수 23명

라. 내 용

1) 제2의 전국운동 추진

2) 공무원친절운동 시군 추진상황 보고회(10개 시군)

- 포항·김천·안동·구미·상주시, 군위·영양  
영덕·성주·칠곡군

- 보고요령 : 별첨

3) 당면 현안사항 시달

문 임 : 공무원친절운동 추진상황 보고회 계획 1부. 끝.

경상북도지사

# 地方自治團體『第2의 建國』推進指針

1998. 10. 30



慶 尚 北 道

## 00시(군)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00시(군)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의(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 한다.

1. 시군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2. 관할구역내 경찰서 경무과장
3. 교육청 학무과장 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00실·국장이, 서기는 00실·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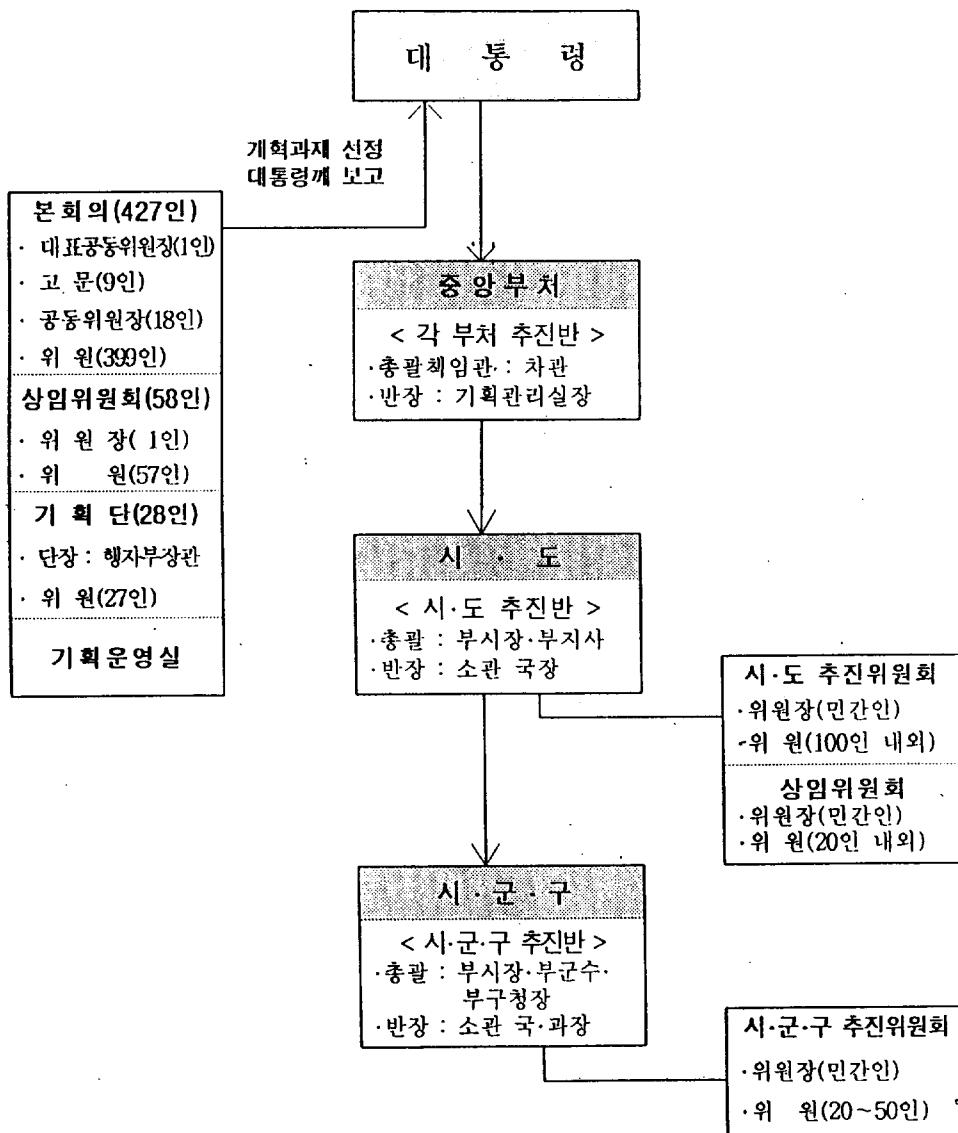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추 진 체 계



## 관 련 법령(발췌)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 '98.10.1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 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